운정자이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의 정부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홈페이지(https://www.xi.co.kr/PU3)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및 사전서류검수,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따라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운정자이 시그니처 당첨자 사전 서류검수, 공급계약 체결 등은 사전예약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예약 방법등은 홈페이지(https://www.xi.co.kr/PU3)를 통해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예정입니다.

■ 운정자이 시그니처 분양상담 전화(1660-2230),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한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2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05.26.)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2.1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2.05.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가목3)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이주대책용 주택)으로 파주 운정3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2조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시행)」(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xi.co.kr/PU3)**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 파주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3년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되며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 처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전매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6월 5일(월)	6월 7일(수)	6월 8일(목)	6월 14일(수)	6월 16일(금) ~ 6월 22일(목)	6월 26일(월) ~6월 29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운정자이 시그니처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20981호(2023.05.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9블록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2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11층, 지상 28층 13개동 총 9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64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가목3) 이주대책자 주택 20세대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8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이주대책 대상자 포함)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주택	2023000100	01	074.9097A	74A	74.9097	23.5714	98.4811	53.4857	151.9668	55.8920	102	14	9	17	2	18	60	42	6
		02	074.9707B	74B	74.9707	22.9941	97.9648	53.5294	151.4942	55.9375	126	13	12	22	3	23	73	53	6
		03	084.9787A	84A	84.9787	26.2181	111.1968	60.6750	171.8718	63.4047	40	13	3	5	-	5	26	14	2
		04	084.9894B	84B	84.9894	25.5077	110.4971	60.6827	171.1798	63.4127	135	15	13	23	4	25	80	55	1
		05	084.9693C	84C	84.9693	26.4080	111.3773	60.6683	172.0456	63.3977	79	7	7	14	2	15	45	34	3
		06	084.9894D	84D	84.9894	25.5077	110.4971	60.6827	171.1798	63.4127	6	1	-	-	-	-	1	5	-
		07	084.9769T	84T	84.9769	28.8547	113.8316	60.6738	174.5054	63.4034	2	1	-	-	-	-	1	1	-
		08	096.9675A	96A	96.9675	28.8515	125.8190	69.2352	195.0542	72.3499	150	-	15	-	4	-	19	131	10
		09	096.9850B	96B	96.9850	28.9687	125.9537	69.2476	195.2013	72.3629	221	-	22	-	6	-	28	193	6
		10	096.9848C	96C	96.9848	31.6240	128.6088	69.2475	197.8563	72.3628	77	-	7	-	2	-	9	68	3
		11	099.9784A	99A	99.9784	30.7315	130.7099	71.3849	202.0948	74.5964	42	-	4	-	1	-	5	37	4
		12	099.9850B	99B	99.9850	29.8094	129.7944	71.3896	201.1840	74.6013	3	-	-	-	-	-	-	3	-
		13	134.9718A	134A	134.9718	45.5956	180.5674	96.4098	276.9772	100.7182	3	-	-	-	-	-	-	3	-
		14	134.9628B	134B	134.9628	44.0615	179.0243	96.4033	275.4276	100.7114	1	-	-	-	-	-	-	1	-
		15	134.9583C	134C	134.9583	44.6317	179.5900	96.4002	275.9902	100.7080	1	-	-	-	-	-	-	1	-
	합 계										988	64	92	81	24	86	347	641	4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한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9㎡A형에서 분리형은 901동,902동,912동,913동의 3층~8층에 24세대 계획되어 있으며, 통합형은 901동의 9층~11층, 902동의 9층~13층, 912동의 9층~12층, 913동의 9층~14층에 18세대 계획되어 있고 청약 시 별도로 구분하여 청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에게 분리형과 통합형의 변경 시공 요청은 불가합니다.
※ 99㎡A 분리세대의 오픈형 발코니는 짝수층은 침실3에, 홀수층은 주방겸 거실 쪽에 교차되어 시공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각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4.9097A	074.9707B	084.9787A	084.9894B	084.9693C	084.9894D	084.9769T	096.9675A	096.9850B	096.9848C	099.9784A	099.9850B	134.9718A	134.9628B	134.9583C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74A	74B	84A	84B	84C	84D	84T	96A	96B	96C	99A	99B	134A	134B	13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타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타입	공급세대수	동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5%)		중도금(60%)						잔금(25%)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2023.07.31	2023.10.16	2024.03.15	2024.08.16	2025.01.15	2025.06.16	2025.11.17	입주 지정기간
74A	102	903동 910동	2층	6	198,673,020	236,726,980	-	435,400,000	20,000,000	45,310,000	43,540,000	43,540,000	43,540,000	43,540,000	43,540,000	43,540,000	108,850,000
			3층	6	202,551,570	241,348,430	-	443,900,000	20,000,000	46,585,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44,390,000	110,975,000
			4층	6	204,513,660	243,686,340	-	448,200,000	20,000,000	47,230,000	44,820,000	44,820,000	44,820,000	44,820,000	44,820,000	44,820,000	112,050,000
			5층	6	206,430,120	245,969,880	-	452,400,000	20,000,000	47,86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113,100,000
			6~10층	30	209,350,440	249,449,560	-	458,800,000	20,000,000	48,82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114,700,000
			11~15층	30	212,270,760	252,929,240	-	465,200,000	20,000,000	49,78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46,520,000	116,300,000
			16~20층	18	215,191,080	256,408,920	-	471,600,000	20,000,000	50,74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47,160,000	117,900,000
74B	126	903동 910동	2층	4	191,691,630	228,408,370	-	420,100,000	20,000,000	43,015,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105,025,000
			3층	4	195,433,290	232,866,710	-	428,300,000	20,000,000	44,245,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107,075,000
			4층	4	197,304,120	235,095,880	-	432,400,000	20,000,000	44,86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43,240,000	108,100,000
			5층	4	199,220,580	237,379,420	-	436,600,000	20,000,000	45,49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109,150,000
			6~10층	20	202,004,010	240,695,990	-	442,700,000	20,000,000	46,405,000	44,270,000	44,270,000	44,270,000	44,270,000	44,270,000	44,270,000	110,675,000
			11~15층	20	204,833,070	244,066,930	-	448,900,000	20,000,000	47,335,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44,890,000	112,225,000
			16~20층	20	207,662,130	247,437,870	-	455,100,000	20,000,000	48,265,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45,510,000	113,775,000
			21층~23층	6	210,491,190	250,808,810	-	461,300,000	20,000,000	49,195,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46,130,000	115,325,000
		911동	2층	2	192,147,930	228,952,070	-	421,100,000	20,000,000	43,165,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42,110,000	105,275,000
			3층	2	195,889,590	233,410,410	-	429,300,000	20,000,000	44,395,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107,325,000
			4층	2	197,760,420	235,639,580	-	433,400,000	20,000,000	45,01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43,340,000	108,350,000
			5층	2	199,676,880	237,923,120	-	437,600,000	20,000,000	45,64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43,760,000	109,400,000
			6~10층	10	202,460,310	241,239,690	-	443,700,000	20,000,000	46,555,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44,370,000	110,925,000
			11~15층	10	205,289,370	244,610,630	-	449,900,000	20,000,000	47,485,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112,475,000
			16~20층	10	208,118,430	247,981,570	-	456,100,000	20,000,000	48,415,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45,610,000	114,025,000
			21층~23층	6	210,947,490	251,352,510	-	462,300,000	20,000,000	49,345,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46,230,000	115,575,000

타입	공급 세대수	동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5%)		중도금(60%)						잔금(25%)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2023.07.31	2023.10.16	2024.03.15	2024.08.16	2025.01.15	2025.06.16	2025.11.17	입주 지정 기간
84A	40	911동	2층	2	224,317,080	267,282,920	-	491,600,000	20,000,000	53,74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122,900,000
			3층	2	228,697,560	272,502,440	-	501,200,000	20,000,000	55,18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125,300,000
			4층	2	230,887,800	275,112,200	-	506,000,000	20,000,000	55,9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26,500,000
			5층	2	233,123,670	277,776,330	-	510,900,000	20,000,000	56,635,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51,090,000	127,725,000
			6~10층	10	236,409,030	281,690,970	-	518,100,000	20,000,000	57,715,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129,525,000
			11~15층	10	239,694,390	285,605,610	-	525,300,000	20,000,000	58,795,000	52,530,000	52,530,000	52,530,000	52,530,000	52,530,000	52,530,000	131,325,000
			16~20층	9	243,025,380	289,574,620	-	532,600,000	20,000,000	59,89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133,150,000
			21층~23층	3	246,310,740	293,489,260	-	539,800,000	20,000,000	60,970,000	53,980,000	53,980,000	53,980,000	53,980,000	53,980,000	53,980,000	134,950,000
84B	135	905동 906동	2층	4	216,194,940	257,605,060	-	473,800,000	20,000,000	51,070,000	47,380,000	47,380,000	47,380,000	47,380,000	47,380,000	47,380,000	118,450,000
			3층	4	220,438,530	262,661,470	-	483,100,000	20,000,000	52,465,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48,310,000	120,775,000
			4층	4	222,583,140	265,216,860	-	487,800,000	20,000,000	53,17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48,780,000	121,950,000
			5층	4	224,682,120	267,717,880	-	492,400,000	20,000,000	53,86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123,100,000
			6~10층	20	227,876,220	271,523,780	-	499,400,000	20,000,000	54,91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49,940,000	124,850,000
			11~15층	20	231,070,320	275,329,680	-	506,400,000	20,000,000	55,96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126,600,000
			16~20층	16	234,218,790	279,081,210	-	513,300,000	20,000,000	56,995,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128,325,000
			21~23층	6	237,412,890	282,887,110	-	520,300,000	20,000,000	58,045,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130,075,000
		907동 911동	2층	3	216,651,240	258,148,760	-	474,800,000	20,000,000	51,22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47,480,000	118,700,000
			3층	3	220,894,830	263,205,170	-	484,100,000	20,000,000	52,615,000	48,410,000	48,410,000	48,410,000	48,410,000	48,410,000	48,410,000	121,025,000
			4층	3	223,039,440	265,760,560	-	488,800,000	20,000,000	53,32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122,200,000
			5층	3	225,138,420	268,261,580	-	493,400,000	20,000,000	54,01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49,340,000	123,350,000
			6~10층	15	228,332,520	272,067,480	-	500,400,000	20,000,000	55,06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50,040,000	125,100,000
			11~15층	15	231,526,620	275,873,380	-	507,400,000	20,000,000	56,110,000	50,740,000	50,740,000	50,740,000	50,740,000	50,740,000	50,740,000	126,850,000
			16~20층	12	234,675,090	279,624,910	-	514,300,000	20,000,000	57,145,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128,575,000
			21~23층	3	237,869,190	283,430,810	-	521,300,000	20,000,000	58,195,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130,325,000
84C	79	904동 909동	2층	2	220,164,750	262,335,250	-	482,500,000	20,000,000	52,375,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120,625,000
			3층	2	224,499,600	267,500,400	-	492,000,000	20,000,000	53,8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23,000,000
			4층	2	226,644,210	270,055,790	-	496,700,000	20,000,000	54,505,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49,670,000	124,175,000
			5층	2	228,834,450	272,665,550	-	501,500,000	20,000,000	55,225,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50,150,000	125,375,000
			6~10층	10	232,074,180	276,525,820	-	508,600,000	20,000,000	56,29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127,150,000
			11~15층	10	235,313,910	280,386,090	-	515,700,000	20,000,000	57,355,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51,570,000	128,925,000
			16~20층	10	238,553,640	284,246,360	-	522,800,000	20,000,000	58,420,000	52,280,000	52,280,000	52,280,000	52,280,000	52,280,000	52,280,000	130,700,000
			21~25층	10	241,747,740	288,052,260	-	529,800,000	20,000,000	59,47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132,450,000
			26층 ~28층	5	244,987,470	291,912,530	-	536,900,000	20,000,000	60,535,000	53,690,000	53,690,000	53,690,000	53,690,000	53,690,000	53,690,000	134,225,000
		908동	2층	1	220,621,050	262,878,950	-	483,500,000	20,000,000	52,525,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120,875,000
			3층	1	224,955,900	268,044,100	-	493,000,000	20,000,000	53,9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23,250,000
			4층	1	227,100,510	270,599,490	-	497,700,000	20,000,000	54,655,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124,425,000
			5층	1	229,290,750	273,209,250	-	502,500,000	20,000,000	55,375,000	50,250,000	50,250,000	50,250,000	50,250,000	50,250,000	50,250,000	125,625,000
			6~10층	5	232,530,480	277,069,520	-	509,600,000	20,000,000	56,44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127,400,000
			11~15층	5	235,770,210	280,929,790	-	516,700,000	20,000,000	57,505,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51,670,000	129,175,000
			16~20층	5	239,009,940	284,790,060	-	523,800,000	20,000,000	58,570,000	52,380,000	52,380,000	52,380,000	52,380,000	52,380,000	52,380,000	130,950,000
			21~25층	5	242,204,040	288,595,960	-	530,800,000	20,000,000	59,62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53,080,000	132,700,000
			26층 ~27층	2	245,443,770	292,456,230	-	537,900,000	20,000,000	60,685,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134,475,000

타입	공급 세대수	동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5%)		중도금(60%)						잔금(25%)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2023.07.31	2023.10.16	2024.03.15	2024.08.16	2025.01.15	2025.06.16	2025.11.17	입주 지정 기간
84D	6	905동 906동	1층	4	225,092,790	268,207,210	-	493,300,000	20,000,000	53,995,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123,325,000
		907동	1층	2	225,549,090	268,750,910	-	494,300,000	20,000,000	54,145,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49,430,000	123,575,000
84T	2	908동	27층	1	255,984,300	305,015,700	-	561,000,000	20,000,000	64,15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40,250,000
		909동	27층	1	255,528,000	304,472,000	-	560,000,000	20,000,000	64,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40,000,000
96A	150	901동 902동 912동 913동 905동 906동	3층	8	245,713,088	292,169,920	29,216,992	567,100,000	30,000,000	55,065,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56,710,000	141,775,000
			4층	8	248,096,128	295,003,520	29,500,352	572,600,000	30,000,000	55,89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143,150,000
			5층	8	250,435,840	297,785,600	29,778,560	578,000,000	30,000,000	56,7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44,500,000
			6~10층	40	253,988,736	302,010,240	30,201,024	586,200,000	30,000,000	57,93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146,550,000
			11~15층	30	257,541,632	306,234,880	30,623,488	594,400,000	30,000,000	59,16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148,600,000
			16~20층	16	261,094,528	310,459,520	31,045,952	602,600,000	30,000,000	60,39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60,260,000	150,650,000
			21~22층	4	264,647,424	314,684,160	31,468,416	610,800,000	30,000,000	61,62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152,700,000
		907동	3층	2	246,146,368	292,685,120	29,268,512	568,100,000	30,000,000	55,215,000	56,810,000	56,810,000	56,810,000	56,810,000	56,810,000	56,810,000	142,025,000
			4층	2	248,529,408	295,518,720	29,551,872	573,600,000	30,000,000	56,04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57,360,000	143,400,000
			5층	2	250,869,120	298,300,800	29,830,080	579,000,000	30,000,000	56,85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44,750,000
			6~10층	10	254,422,016	302,525,440	30,252,544	587,200,000	30,000,000	58,08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58,720,000	146,800,000
			11~15층	10	257,974,912	306,750,080	30,675,008	595,400,000	30,000,000	59,310,000	59,540,000	59,540,000	59,540,000	59,540,000	59,540,000	59,540,000	148,850,000
			16~20층	8	261,527,808	310,974,720	31,097,472	603,600,000	30,000,000	60,54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60,360,000	150,900,000
			21~22층	2	265,080,704	315,199,360	31,519,936	611,800,000	30,000,000	61,77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61,180,000	152,950,000
96B	221	904동 905동 906동 909동	2층	6	234,014,528	278,259,520	27,825,952	540,100,000	30,000,000	51,015,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135,025,000
			3층	6	238,607,296	283,720,640	28,372,064	550,700,000	30,000,000	52,605,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137,675,000
			4층	6	240,903,680	286,451,200	28,645,120	556,000,000	30,000,000	53,4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39,000,000
			5층	6	243,200,064	289,181,760	28,918,176	561,300,000	30,000,000	54,195,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140,325,000
			6~10층	30	246,666,304	293,303,360	29,330,336	569,300,000	30,000,000	55,395,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142,325,000
			11~15층	30	250,089,216	297,373,440	29,737,344	577,200,000	30,000,000	56,58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144,300,000
			16~20층	30	253,512,128	301,443,520	30,144,352	585,100,000	30,000,000	57,765,000	58,510,000	58,510,000	58,510,000	58,510,000	58,510,000	58,510,000	146,275,000
			21~25층	24	256,978,368	305,565,120	30,556,512	593,100,000	30,000,000	58,965,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148,275,000
			26층~28층	10	260,401,280	309,635,200	30,963,520	601,000,000	30,000,000	60,15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50,250,000
		907동 908동	2층	3	234,447,808	278,774,720	27,877,472	541,100,000	30,000,000	51,165,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135,275,000
			3층	3	239,040,576	284,235,840	28,423,584	551,700,000	30,000,000	52,755,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137,925,000
			4층	3	241,336,960	286,966,400	28,696,640	557,000,000	30,000,000	53,55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39,250,000
			5층	3	243,633,344	289,696,960	28,969,696	562,300,000	30,000,000	54,345,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140,575,000
			6~10층	15	247,099,584	293,818,560	29,381,856	570,300,000	30,000,000	55,545,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142,575,000
			11~15층	15	250,522,496	297,888,640	29,788,864	578,200,000	30,000,000	56,73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144,550,000
			16~20층	15	253,945,408	301,958,720	30,195,872	586,100,000	30,000,000	57,915,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58,610,000	146,525,000
			21~25층	12	257,411,648	306,080,320	30,608,032	594,100,000	30,000,000	59,115,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148,525,000
			26층~28층	4	260,834,560	310,150,400	31,015,040	602,000,000	30,000,000	60,3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150,500,000

타입	공급세대수	동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5%)		중도금(60%)						잔금(25%)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2023.07.31	2023.10.16	2024.03.15	2024.08.16	2025.01.15	2025.06.16	2025.11.17	입주 지정 기간
96C	77	904동 909동	2층	2	234,014,528	278,259,520	27,825,952	540,100,000	30,000,000	51,015,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54,010,000	135,025,000
			3층	2	238,607,296	283,720,640	28,372,064	550,700,000	30,000,000	52,605,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137,675,000
			4층	2	240,903,680	286,451,200	28,645,120	556,000,000	30,000,000	53,4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39,000,000
			5층	2	243,200,064	289,181,760	28,918,176	561,300,000	30,000,000	54,195,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56,130,000	140,325,000
			6~10층	10	246,666,304	293,303,360	29,330,336	569,300,000	30,000,000	55,395,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142,325,000
			11~15층	10	250,089,216	297,373,440	29,737,344	577,200,000	30,000,000	56,58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144,300,000
			16~20층	10	253,555,456	301,495,040	30,149,504	585,200,000	30,000,000	57,78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146,300,000
			21~25층	10	256,978,368	305,565,120	30,556,512	593,100,000	30,000,000	58,965,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59,310,000	148,275,000
			26층~28층	4	260,401,280	309,635,200	30,963,520	601,000,000	30,000,000	60,15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50,250,000
		908동	2층	1	234,447,808	278,774,720	27,877,472	541,100,000	30,000,000	51,165,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54,110,000	135,275,000
			3층	1	239,040,576	284,235,840	28,423,584	551,700,000	30,000,000	52,755,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137,925,000
			4층	1	241,336,960	286,966,400	28,696,640	557,000,000	30,000,000	53,55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39,250,000
			5층	1	243,633,344	289,696,960	28,969,696	562,300,000	30,000,000	54,345,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56,230,000	140,575,000
			6~10층	5	247,099,584	293,818,560	29,381,856	570,300,000	30,000,000	55,545,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57,030,000	142,575,000
			11~15층	5	250,522,496	297,888,640	29,788,864	578,200,000	30,000,000	56,73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57,820,000	144,550,000
			16~20층	5	253,988,736	302,010,240	30,201,024	586,200,000	30,000,000	57,93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58,620,000	146,550,000
			21~25층	5	257,411,648	306,080,320	30,608,032	594,100,000	30,000,000	59,115,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59,410,000	148,525,000
			26층	1	260,834,560	310,150,400	31,015,040	602,000,000	30,000,000	60,3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150,500,000
99A	42	901동 902동 912동 913동	3층	4	255,288,576	303,555,840	30,355,584	589,200,000	30,000,000	58,380,000	58,920,000	58,920,000	58,920,000	58,920,000	58,920,000	58,920,000	147,300,000
			4층	4	257,758,272	306,492,480	30,649,248	594,900,000	30,000,000	59,235,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59,490,000	148,725,000
			5층	4	260,184,640	309,377,600	30,937,760	600,500,000	30,000,000	60,075,000	60,050,000	60,050,000	60,050,000	60,050,000	60,050,000	60,050,000	150,125,000
			6~10층	20	263,867,520	313,756,800	31,375,680	609,000,000	30,000,000	61,35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52,250,000
			11~14층	10	267,550,400	318,136,000	31,813,600	617,500,000	30,000,000	62,625,000	61,750,000	61,750,000	61,750,000	61,750,000	61,750,000	61,750,000	154,375,000
99B	3	905동 906동	1층	2	255,938,496	304,328,640	30,432,864	590,700,000	30,000,000	58,605,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147,675,000
		907동	1층	1	256,371,776	304,843,840	30,484,384	591,700,000	30,000,000	58,755,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59,170,000	147,925,000
134A	3	905동 906동	23층	2	497,535,424	591,604,160	59,160,416	1,148,300,000	50,000,000	122,245,000	114,830,000	114,830,000	114,830,000	114,830,000	114,830,000	114,830,000	287,075,000
		907동	23층	1	497,968,704	592,119,360	59,211,936	1,149,300,000	50,000,000	122,395,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114,930,000	287,325,000
134B	1	909동	28층	1	496,062,272	589,852,480	58,985,248	1,144,900,000	50,000,000	121,735,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114,490,000	286,225,000
134C	1	909동	28층	1	493,809,216	587,173,440	58,717,344	1,139,700,000	50,000,000	120,955,000	113,970,000	113,970,000	113,970,000	113,970,000	113,970,000	113,970,000	284,925,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 전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 수

(단위: 세대)

구 분			074.9097A	074.9707B	084.9787A	084.9894B	084.9693C	084.9894D	084.9769T	096.9675A	096.9850B	096.9848C	099.9784A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대상자(철거주택)		5	1	10	2	-	1	1	-	-	-	-	20
	장애인	경기도	1	2	1	2	1	-	-	-	-	-	-	7
		인천시	1	1	-	1	1	-	-	-	-	-	-	4
		서울시	1	1	-	1	1	-	-	-	-	-	-	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1	2	-	2	1	-	-	-	-	-	-	6
		장기복무제대군인	2	1	-	2	1	-	-	-	-	-	-	6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2	1	2	1	-	-	-	-	-	-	7
	중소기업 근로자		1	2	1	2	1	-	-	-	-	-	-	7
	북한이탈주민		1	1	-	1	-	-	-	-	-	-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5	6	2	7	4	-	-	8	11	4	2	4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6	1	6	3	-	-	7	11	3	2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17	22	5	23	14	-	-	-	-	-	-	8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3	-	4	2	-	-	4	6	2	1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18	23	5	25	15	-	-	-	-	-	-	86
합계			60	73	26	80	45	1	1	19	28	9	5	34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단독세대 제외),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table>
<tr><td></td><td>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h>경기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td></tr>
</ta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도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접수가 원칙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 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주택 포함)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가목3)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 총 6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이주대책 대상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운정3지구 A19블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이주대책 대상자(철거주택),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
– 이주대책자(철거주택) : LH경기북부지역본부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이주대책대상자)**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내에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음)
– 이주대책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

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이주대책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전수요조사에 응하여 청약접수한 후 당첨 주택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전수요조사에 응한 후 청약 미신청시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사전수요조사에 응한 후 청약을 접수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9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경기도 거주자 우선 공급에서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경기도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수도권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미적용)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8% 범위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단지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기준
04.01. ~ 06.30. (2023.05.26.)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합니다.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2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 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9% 범위 : 8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단지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기준
04.01. ~ 06.30. (2023.05.26.)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 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30%)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단,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추첨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6.05(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 운정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3.06.07(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06.08(목)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

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동의」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자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td><td>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비서류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3.06.14.(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3.06.16.(금) ~ 2023.06.22.(목)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 일시 - 2023.06.26.(월) ~ 2023.06.29.(목)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사전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6.14.(수) ~ 2023.06.23.(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6.1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일반공급(예비당첨자 포함) 계약 시 구비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2항(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전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모든 제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등(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표 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청자격별 구비서류(이주대책 대상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 생략)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 생략)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표 6]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대상자)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 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아래 <표 4> 참고)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 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 3>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 3>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부동산 소유현황 (아래 <표 4> 참고)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이 점수 산정)
	○		출입국 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타(가점 확인 서류) (아래 <표 5> 참고)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아래 <표 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서명 또는 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단지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기준
04.01. ~ 06.30. (2023.05.26.)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전전년도 소득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④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표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 여부	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⑤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망.

<표 4> 부동산 소유현황 등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표 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주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표 6] 참조]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또는 배우자의 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원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여부, 세대주와의 관계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표 6>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필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또는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이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장소
일시	2023.06.26.(월) ~ 2023.06.29.(목) (10:00~17:00)	운정자이 시그니처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분양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당첨자 본인 계약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장 수납 불가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O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여부 확인 추가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해당자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비치 (6억원 초과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O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대금 1차 계약금	하나은행	150-910072-320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공급대금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공급대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로 상이하며, 향후 모계좌(하나은행, 150-910072-32004 예금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901동 1001호 계약자 → '9011001홍길동' / 901동 301호 계약자 → '90103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근린공원 시설물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청약 당첨이 제한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6억원 초과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거래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보다 높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등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 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사업주체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의 시장상황에 따라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한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20%)	1차 중도금(30%)	2차 중도금(30%)	잔금(20%)
		계약시	2023.10.16	2025.01.15	입주지정일
74A	8,790,000	1,758,000	2,637,000	2,637,000	1,758,000
74B	8,330,000	1,666,000	2,499,000	2,499,000	1,666,000
84A	9,410,000	1,882,000	2,823,000	2,823,000	1,882,000
84B	9,250,000	1,850,000	2,775,000	2,775,000	1,850,000
84C	6,970,000	1,394,000	2,091,000	2,091,000	1,394,000
84D	9,920,000	1,984,000	2,976,000	2,976,000	1,984,000
84T	8,410,000	1,682,000	2,523,000	2,523,000	1,682,000
96A	9,930,000	1,986,000	2,979,000	2,979,000	1,986,000
96B	8,860,000	1,772,000	2,658,000	2,658,000	1,772,000
96C	7,980,000	1,596,000	2,394,000	2,394,000	1,596,000
99A	9,620,000	1,924,000	2,886,000	2,886,000	1,924,000
99B	8,580,000	1,716,000	2,574,000	2,574,000	1,716,000
134A	7,100,000	1,420,000	2,130,000	2,130,000	1,420,000
134B	6,150,000	1,230,000	1,845,000	1,845,000	1,230,000
134C	7,280,000	1,456,000	2,184,000	2,184,000	1,456,000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새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 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 또는 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변경, 바닥레벨 변경 및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하나은행	150-910072-307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 잔금계좌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세대별로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할 예정임)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901동 1001호 계약자 → '9011001홍길동' / 901동 301호 계약자 → '9010301홍길동'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 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STYLE UP / 주방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내역

구분				설치 내역
거실/복도/현관	현관스타일업			현관 벽면 시트판넬, 바닥 유럽산타일(600x600), ※ 현관 마감 선택시 현관, 신발장 하부에 특화조명이 시공됩니다.
	거실/복도벽 마감스타일업			거실/복도 아트월 유럽산타일(600*1200), 거실/복도 벽면 시트판넬 및 유럽산타일(600*1200) ※적용부위 세대타입별 상이
	거실/복도 천장스타일업			거실 건축화조명: 업라이트(간접), 다운라이트, 시트판넬 등, 거실/복도아트월 단천장 및 리니어등
침실 조명스타일업				침실 특화조명
주방	주방공간	택1	주방 스타일업 I	유럽산 세라믹 패널 주방상판(12T) 및 유럽산 벽타일(600*1200), 독립형 후드, 유럽산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 적용 주방가구, 벽면 시트판넬 ※적용부위 세대타입별 상이
			주방 스타일업 II	유럽산 세라믹 패널 주방상판(12T) 및 유럽산 벽타일(600*1200), 독립형 아일랜드, 독립형 후드, 전기쿡탑(선택1. 3구 하이브리드 / 선택2. 3구 인덕션, 주방 팬트리(ㄷ자 선반)+대형 현관창고, 유럽산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 적용 주방가구, 벽면 시트판넬 ※적용부위 세대타입별 상이 - 주방스타일업 II의 경우 쿡탑 위치 변경 등으로 가스배관 시공이 불가능하여 가스쿡탑이 설치 불가하며, 전기 쿡탑을 3구 하이브리드 또는 3구 인덕션 중 택1 하여야 합니다.
			주방 스타일업 III	유럽산 세라믹 패널 주방상판(12T) 및 유럽산 벽타일(600*1200), 독립형 후드, 유럽산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 적용 주방가구
	주방천장	택1	주방 천장스타일업 I	주방 우물천장
			주방 천장스타일업 II	주방 우물천장 + 간접조명 +특화조명 + 시트판넬
			주방 천장스타일업 III	시트판넬 + 특화조명 + 거실 우물천장 사이즈 변경(96B, 99B해당) / (공간의 일체감 및 시공 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방스타일업 III 및 거실/복도 천장 스타일업 선택 시 가능합니다.) - 99A 분리세대의 경우 시공 공간 협소로 특화조명만 시공됩니다.
	상부장특화			플랩 전동유리도어 상부장(내부조명 및 상하간접조명 포함) / (주방구조 사용상의 간섭으로 주방스타일업을 선택한 경우 가능합니다.)
	홈바	74A/84A,T/96A,C 해당		홈바(하부장+세라믹 패널상판+플랩 수동유리도어 상부장) - 74A, 84A, 96A의 경우 홈바 공간확보가 가능한 주방 스타일업 II를 선택한 경우 가능합니다.
	식탁	74B/84B,C,D,T/96B,C/99A메인세대),B 해당		아일랜드 일체형 식탁(세라믹 패널 상판) - 주방구조상 주방 상판에 연결되는 일체형 아일랜드 식탁 (주방스타일업 I (84C,84T,96C),III을 선택한 경우 가능합니다.)

■ 공급대금

구분					74A		74B	84A		84B	84C	84D	84T
					74A 확장 기본	74A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84A 확장 기본	84A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거실/복도/현관	현관 스타일업				420,000	420,000	420,000	430,000	430,000	420,000	420,000	420,000	450,000
	거실/복도벽 마감스타일업				1,720,000	1,780,000	2,170,000	1,860,000	1,900,000	2,200,000	2,030,000	2,200,000	2,490,000
	거실/복도 천장스타일업				4,820,000	4,820,000	5,340,000	5,050,000	5,050,000	5,890,000	4,860,000	5,890,000	5,710,000
침실 조명스타일업					1,600,000	1,600,000	1,600,000	1,610,000	1,610,000	1,620,000	1,620,000	1,620,000	1,230,000
주방	주방공간	택1	주방 스타일업 I		5,980,000	-	-	6,140,000	-	-	7,110,000	-	6,130,000
			주방 스타일업 II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시	-	7,430,000	-	-	7,400,000	-	-	-	-
				인덕션 선택시	-	8,200,000	-	-	8,170,000	-	-	-	-
			주방 스타일업 III		-	-	6,930,000	-	-	6,430,000	-	6,430,000	-
	주방 상부장 특화 ※주방스타일업 I,II,III 선택시				4,690,000	6,840,000	4,690,000	4,690,000	6,840,000	6,840,000	6,840,000	6,840,000	4,690,000
	홈바 ※74A,84A,96A의 경우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	4,890,000	-	-	5,290,000	-	-	-	4,240,000
	식탁 ※주방스타일업 I (84C,84T,96C 해당),III 선택시				-	-	1,420,000	-	-	1,420,000	1,470,000	1,420,000	1,430,000
	주방천장	택1	주방 천장스타일업 I		200,000	210,000	-	200,000	200,000	-	140,000	-	150,000
			주방 천장스타일업 II		1,460,000	1,830,000	-	1,460,000	1,880,000	-	1,340,000	-	1,350,000
			주방 천장스타일업 III ※주방스타일업 III + 거실/복도 천장스타일업 선택시		-	-	1,580,000	-	-	1,620,000	-	1,620,000	-

구분					96A		96B	96C	99A		99B	134A	134B	134C
					96A 확장 기본	96A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99A 메인세대	99A 분리세대				
거실/복도/현관	현관 스타일업				480,000	480,000	420,000	490,000	480,000	670,000	470,000	480,000	460,000	1,040,000
	거실/복도벽 마감스타일업				2,030,000	2,040,000	2,000,000	2,470,000	1,940,000	1,320,000	1,990,000	5,440,000	5,290,000	5,290,000
	거실/복도 천장스타일업				5,160,000	5,160,000	5,980,000	5,830,000	5,270,000	3,740,000	5,870,000	6,090,000	5,880,000	6,260,000
침실 조명스타일업					1,730,000	1,730,000	1,360,000	1,340,000	890,000	450,000	1,360,000	1,810,000	2,260,000	1,810,000
주방	주방 공간	택1	주방 스타일업 I		6,460,000	-	-	5,970,000	-	-	-	9,500,000	7,670,000	7,210,000
			주방 스타일업 II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시	-	8,370,000	-	-	-	-	-	-	-	-
				인덕션 선택시	-	9,140,000	-	-	-	-	-	-	-	-
		주방 스타일업 III			-	-	7,760,000	-	7,600,000	2,720,000	7,760,000	-	-	-
	주방 상부장 특화 ※주방스타일업 I ,II ,III 선택시				4,690,000	6,840,000	2,530,000	4,690,000	6,840,000	-	2,530,000	6,840,000	11,150,000	6,840,000
	홈바 ※74A,84A,96A의 경우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	5,900,000	-	3,570,000	-	-	-	-	-	-
	식탁 ※주방스타일업 I (84C,84T,96C 해당),III 선택시				-	-	1,470,000	1,430,000	1,420,000	-	1,470,000	-	-	-
	주방 천장	택1	주방 천장스타일업 I		210,000	280,000	-	150,000	-	-	-	250,000	210,000	210,000
			주방 천장스타일업 II		1,470,000	2,070,000	-	1,430,000	-	-	-	1,830,000	1,470,000	1,470,000
		주방 천장스타일업 III ※주방스타일업 III + 거실/복도 천장스타일업 선택시			-	-	1,600,000	-	1,530,000	240,000	1,600,000	-	-	-

※ 각 타입에 따라 설치 품목 및 위치가 일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PU3)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Style Up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다용도실 STYLE UP / 욕실 STYLE UP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설치내역

구분		설치 내역
다용도실	다용도실 스타일업	다용도실 보조주방 : 상/하부장, 손빨래볼,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행주걸이봉, 간접조명 / 와이드 다용도실(복도팬트리 공간 축소 96B, 99B 해당) : 상/하부장, 손빨래볼,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행주걸이봉, 간접조명 / 134A,B,C의 경우 상부장만 제공됩니다.(손빨래볼, 하부장, 엔지니어드 상판 기본제공)
욕실 스타일업	가족욕실 스타일업	유럽산 타일벽 및 바닥, 욕조에이프런(가족욕실) / 수전 및 위생도기류, 액세서리, 일체형비데 / 세미카운터형 세면대 : 하부수납장 포함 / ※ 가족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특화조명이 시공됩니다.
	부부욕실 스타일업	유럽산타일 벽 및 바닥, / 샤워부스 무광 브론즈컬러(부부욕실) / 수전 및 위생도기류, 액세서리, 일체형비데 / 세미카운터형 세면대 : 하부수납장 포함 ※ 부부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특화조명이 시공됩니다.

■ 공급대금

구분		74A	74B	84A	84B	84C	84D	84T	96A	96B	96C	99A		99B	134A	134B	134C
												99A 메인세대	99A 분리세대				
다용도실스타일업		880,000	880,000	990,000	910,000	940,000	910,000	910,000	990,000	1,630,000	910,000	910,000	-	1,630,000	820,000	820,000	820,000
욕실 스타일업	가족욕실	3,190,000	3,180,000	3,210,000	3,210,000	3,210,000	3,210,000	3,210,000	3,410,000	3,410,000	3,410,000	3,410,000	-	3,410,000	3,320,000	3,500,000	3,470,000
	부부욕실	4,190,000	4,190,000	4,190,000	4,190,000	4,190,000	4,190,000	4,190,000	4,340,000	4,340,000	4,280,000	4,380,000	4,190,000	4,340,000	4,850,000	4,870,000	4,850,000

※ 각 타입에 따라 설치 품목 및 위치가 일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PU3)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업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개별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74A	74B	84A	84B	84C	84D	84T	96A	96B	96C	99A		99B	134A	134B	134C
											99A 메인세대	99A 분리세대				
현관 3연동 자동문 [1Fix 2Sliding]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2,050,000
냉장고 키큰장 수납특화 [특화수납장(키큰장)]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2,50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ㄷ자 선반/벽판넬형]	-	-	-	-	-	-	2,340,000	-	3,590,000	2,330,000	-	-	3,480,000	3,340,000	4,090,000	4,090,000
침실1화장대+드레스룸 특화 [ㄷ자 선반/벽판넬형]	4,020,000	-	4,220,000	-	-	-	-	4,060,000	-	-	-	-	-	-	-	-
침실1 SUB드레스룸 특화 [ㄷ자 선반/벽판넬형]	-	-	-	-	4,050,000	-	-	-	-	-	-	-	-	-	-	-
복도장식장 (+침실1 드레스룸 or 팬트리 or 현관창고 / 타입별 상이) ※ 74A,84A,96A의 경우 주방스타일업② 및 홈바 선택시 가능	2,150,000	2,700,000	2,570,000	2,600,000	-	2,600,000	-	2,600,000	1,920,000	-	2,470,000	-	1,960,000	-	-	-
침실2 또는 침실3 붙박이장 ※세대 타입별 상이	930,000	930,000	1,130,000	930,000	1,130,000	930,000	1,130,000	1,130,000	1,130,000	1,130,000	930,000	640,000	1,130,000	1,330,000	1,130,000	1,130,000
주방 붙박이장+복도 장식장	-	-	-	-	-	-	-	-	-	-	-	-	-	-	3,180,000	3,180,000
거실/안방 1way 전동 커튼 레일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870,000	1,400,000	2,100,000	2,100,000	1,400,000	1,25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3인치 주방TV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	440,000	440,000	440,000	440,000

■ 거실/복도/주방바닥 옵션 공급대금

구분			74A		74B	84A		84B	84C	84D	84T
			74A 확장기본	74A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84A 확장기본	84A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거실/복도/주방바닥 ※ 거실/복도/주방/침실 기본 강마루 설치	택1	**거실/복도/주방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2,210,000	2,400,000	2,050,000	2,470,000	2,680,000	2,230,000	2,140,000	2,230,000	2,860,000
		거실/복도/주방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 침실바닥 원목마루	6,300,000	6,120,000	6,040,000	7,110,000	6,920,000	6,870,000	6,960,000	6,870,000	6,930,000
		거실/복도/주방/침실바닥 원목마루	8,330,000	8,330,000	7,930,000	9,390,000	9,390,000	8,920,000	8,940,000	8,920,000	9,560,000

구분			96A		96B	96C	99A		99B	134A	134B	134C
			96A 확장기본	96A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99A 메인세대	99A 분리세대				
거실/복도/주방바닥 ※ 거실/복도/주방/침실 기본 강마루 설치	택1	**거실/복도/주방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2,550,000	2,780,000	2,820,000	3,270,000	2,210,000	1,190,000	2,820,000	4,420,000	4,390,000	4,940,000
		거실/복도/주방바닥 유럽산 포셀린 타일 + 침실바닥 원목마루	7,850,000	7,630,000	7,440,000	7,420,000	4,930,000	2,120,000	7,760,000	10,470,000	10,400,000	10,210,000
		거실/복도/주방/침실바닥 원목마루	10,200,000	10,200,000	10,040,000	10,440,000	6,970,000	3,210,000	10,370,000	14,550,000	14,450,000	14,230,000

※ 주택형별로 추가 선택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이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

※ 설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PU3)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붙박이장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홈페이지(https://xi.co.kr/PU3) 또는 견본주택을 확인 후 선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납부 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 주방, 거실조명, 마감 공급대금	계약시	2023.10.16	입주지정기간	하나은행	150-910072-313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901동 1001호 계약자 → '9011001홍길동' / 901동 301호 계약자 → '90103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옵션 선택품목 ※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시스템에어컨 (LG전자 Premium UVnano 실내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대수	설치장소	공급가격	비고	제조사
시스템에어컨	74A/B 84A/B/D 96B	2 대	거실 + 침실 1	3,950,000		LG전자
		3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1 개소	5,440,000		
		4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2 개소	7,210,000		
	84B/D	5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3 개소	8,530,000		
	84C	2 대	거실 + 침실 1	3,960,000		
		3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1 개소	5,450,000		
		4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2 개소	7,220,000		
	84T 96A/C	3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5,440,000		
		4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 침실 1 개소	7,210,000		
		5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 침실 2 개소	8,530,000		
	96A	6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 침실 3 개소	9,840,000		
	99A(통합형)	2 대	거실 + 침실 1	3,950,000		
		3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2 또는 침실 3	5,440,000		
		4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7,210,000		
		3 대	거실 + 거실 2 + 침실 1	5,930,000		
		4 대	거실 + 거실 2 + 침실 1 + 침실 2 또는 침실 3	7,240,000		
		5 대	거실 + 거실 2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8,560,000		
	99A(분리형)	2 대	거실 + 침실 1 [메인 세대]	3,950,000		
		3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2 [메인 세대]	5,440,000		
		4 대	거실 + 침실 1 [메인 세대] / 거실 2 + 침실 3 [분리 세대]	7,560,000	실외기 2대 (실외기실1대, 분리세대 발코니1대)	
		5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2 [메인 세대] / 거실 2 + 침실 3 [분리 세대]	9,050,000		
	99B	2 대	거실 + 침실 1	3,950,000		
		3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3	5,450,000		
		4 대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7,220,000		
	134A	3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6,170,000		
		4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 침실 1 개소	7,740,000		
		5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 침실 2 개소	9,060,000		

품목	타입	대수	설치장소	공급가격	비고	제조사
		6 대	거실 + 주방 + 침실 1 + 침실 3 개소	11,070,000		
	134B	4 대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7,280,000		
		5 대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침실 1 개소	8,860,000		
		6 대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침실 2 개소	10,170,000		
		7 대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침실 3 개소	11,790,000		
	134C	4 대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7,550,000		
		5 대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침실 1 개소	8,870,000		
		6 대	거실 + 주방 + 가족실 + 침실 1 + 침실 2 개소	10,18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99A(세대분리) 4대 / 99A(세대분리) 5대 선택 시 실외기는 2대가 설치(실외기실 1대, 분리세대 옥외공간 1대)됩니다.

시스클라인(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공급업체	비고
시스클라인	74A, 74B, 84A, 84B, 84C, 84D, 84T, 96B, 99B	1 대	주방	920,000	자이에스앤디	
		3 대	주방, 침실2, 침실3	2,480,000		
	96A	1 대	주방	920,000		
		3 대	주방, 침실2, 침실3	2,480,000		주방스타일업 II 선택시
		4 대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3,260,000		
	96C	1 대	주방	920,000		
		4 대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3,260,000		
	99A(통합형)	1 대	주방	920,000		
		3 대	주방 , 침실2, 침실3	2,480,000		
		4 대	주방 , 침실2, 침실3, 거실2	3,400,000		
	99A(분리형)	1 대	주방	920,000		
		2 대	주방, 침실2	1,700,000		
		4 대	주방, 침실2, 침실3 (분리세대), 거실2 (분리세대)	3,400,000		
	134A	1 대	주방	920,000		
		4 대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3,260,000		
	134B	1 대	주방	920,000		
		4 대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3,260,000		
		5 대	주방, 침실2, 침실3, 침실4, 가족실	4,040,000		
	134C	1 대	주방	920,000		
		3 대	주방, 침실2, 침실3	2,480,000		
		4 대	주방, 침실2, 침실3, 가족실	3,260,000		

-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시스클라인 기본 2대(거실, 침실1) 제공됩니다.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구성품은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리모컨이며 천장형 공기청정기 1대당 제어용 리모컨 1대를 제공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해당타입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전 타입	빌트인 냉장고	S715SI24B	5,750,000	LG 전자	홈바형	
		S695SI34B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R	1,450,000		김치냉장고	
		K221PR14BL	1,450,000			
	광파오븐	MZ385EBTAD	540,000		드로워 포함	
		MZ385EBTA	450,000		드로워 미포함	
	식기세척기	DIB22S	1,100,000		가구 부착형	
		DUB22SB2	1,100,000		도어 일체형	
	쿡탑	BEI3GTBI	1,220,000	LG 전자	인덕션 3 구	99A 분리세대 선택불가
		CIHR-D303FB	450,000	쿠쿠	인덕션 2 구 + 하이라이트 1 구	2구 하이라이트 쿡탑 기본제공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전 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가전유상옵션 납부계좌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주방가전)	신한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가전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공급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가전 유상옵션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주방가전 등)은 시공 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에서 계약 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추가 선택품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목재・플라스틱문틀(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포함), 창호철물 일체(도어록, 도어레버 등) 가구 도어(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등), 현관 디지털도어록	세대 현관방화문(문짝 포함), 실외기실 출입문(문짝 포함), PL창호(유리 포함), 실외기실 루버
바닥	강마루, 현관/발코니/다용도실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걸레받이, 현관디딤판, 현관마루귀틀, 발코니/다용도실 재료분리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 포함), 벽체 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신발장, 드레스룸 도어, 거실 아트월타일	시멘트벽돌 벽체(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마감, 발코니벽체 CRC보드, GAS배관
천장	벽지(초배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인테리어 마감재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감지기), 설비배관
욕실	천정재(천정틀 포함),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위생기구류(양변기, 세면기, 욕조, 기타 악세서리 류 등), 수전류, 비데(부부욕실), 욕실환기휀, 젠다이 상부 석재	시멘트벽돌, 벽체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주방	주방가구(주방상판, 냉장고장 등, 싱크볼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기구류(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 등), 수전류,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등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일반가구	신발장, 안방화장대,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스페이스월 포함), 팬트리, 시스템선반	-
기타	발코니 수전류,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외부 발코니난간대, 하향식피난구,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74A	74B	84A	84B	84C	84D	84T	96A	96B	96C	99A	99B	134A	134B	134C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8,547,000	28,551,000	32,408,000	32,204,000	32,978,000	32,204,000	33,705,000	37,311,000	37,852,000	38,949,000	38,546,000	38,704,000	52,626,000	53,009,000	53,176,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 기본형 공급금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공급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공급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감소분을 공급대금 잔금에서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자재발주 문제 등으로 추가신청 및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부분에 대한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 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Ⅷ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3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2022년12월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 단지 북측에는 33.5M도로, 동측에는 44M도로(지하차도), 남측에는 20.5M 도로와 10M 보행자전용도로, 서측에는 22~23M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및 도로단지 주변현황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방음벽 [북측_H=16M L=275.5M, 동측_H=12M L=258.1M]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방음벽 디자인은 실시설계 후 확정됩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북서쪽 청룡두천 수변공원(예정) 인접한 도로에는 종교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중심을 반경으로 약 1km 위치에 학교는 석곶초등학교, 교하중학교, 교하고등학교, 산들초등학교, 산들중학교, 산내초등학교, 운정고등학교, 학교신설계획(미정) 등이 위치하여 교내방송 및 타종 등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외 인접한 시설로는 종교기관(순복음믿음의교회, 운정참존교회 등), 교하 119 안전센터, 주유소 등이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남측, 북측에는 공동주택 신축 등 인접지역 개발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공사와 오수 중계 펌프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동선과 외부와의 연결 통로의 개수 및 위치는 주변 개발계획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본선터널에 인접하여 철도관련 개량 공사,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사 중 열차운행 및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규정치 이내 영향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개발이 공동시공하는 사업장이며, 지에스건설㈜이 주관하여 시공 및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파주운정 3 택지개발사업지구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 주택건설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변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송전탑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지상경사로,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환기구, 쓰레기투입구,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 [어린이집 관련]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파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돌봄센터 관련] 본 아파트 내에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파주시청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는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파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인근 계획된 초등용지([가칭]운정4초)를 포함하여 운정3택지개발지구 내 설립계획 중인 학교(유치원 포함)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학교(유치원 포함) 설립계획은 투자심사 승인 여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 상황, 인근 공동주택 분양공고율, 실입주 상황, 학교 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생은 원 통학구역인 (가칭)운정 4초 설립을 통해 배치 예정이며, 향후 학교설립 추진상황에 따라 (가칭)운정 4초의 2026.03 월 개교가 불가할 경우 인근학교에 임시배치될 수 있습니다. 임시배치될 경우 학생통학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사업주체 부담) 예정이며, 학교설립을 포함한 학생배치계획은 변동요인 발생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교하·운정중학군(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5중) 학군 배치로 주소지에 따라 학생들 선 지망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배치 : 파주시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따라 파주시 기존 고등학교 및 파주 지역 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지망에 따라 배정됩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파주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추진 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구 내 학교 등 교육시설 용지(유치원 포함)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향후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911동 1, 2호라인에 인접하여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지상 1층, 최상층 및 5개층 마다 프로젝트창으로 나머지는 고정창으로 적용되고,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908동의 최상층에는 CLUB CLOUD(스카이라운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스카이라운지 내부조명 및 외부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과 이용자의 출입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910동 지하1층에 설치되며, 게스트하우스는 903동 지하1층에 설치되고,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는 910동, 911동, 913동 주변에 설치되며, 숲속도서관은 905동, 907동, 908동과 인접하여 설치되며, 반려동물 휴게공간은 906과 907동 사이에 설치됩니다. • (901동, 902동)과 (912동, 913동) 하부 및 사이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03동과 910동 사이의 지하1층에는 클럽자이안(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며, 903동과 인접하여 설치된 실외기실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09동 지상1층에는 아너스클럽(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 동(901동, 902동)은 지상 1층,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존재하여 인접한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하1층 주차장 사용에 있어 제약 및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903동, 910동)은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존재하여 인접한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지하1층과 연결되지 않아 지하2층의 해당동 인근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어린이집, 아너스클럽(경로당) 등 부대시설과 상가의 외부는 석재, 벽돌, 타일, 금속 등 기타자재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상가용 실외기가 외부 또는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 및 공간에서 미관의 저해와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 및 외벽장식물의 형태와 크기, 위치, 색채,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사생활침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주거동 상부(908동 제외)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 조망권 · 소음진동 · 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이 비내력벽으로, 비내력벽이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옥상층(옥외안테나, 중계장치) - 903동, 905동, 907동, 909동, 911동, 913동 / 중계장치 - 지하1층 제연휀룸 3개소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02동, 913동) 외벽과 어린이집 근접하여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권간섭,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일부 구간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기 안전매트 설치공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와 유아용 텃밭은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뿜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부 외벽면에는 금속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어 빛반사 등 눈부심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911동 상층부 내측 측벽일부에 금속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어 빛반사 등 눈부심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측 문주와 연결되는 구조물로 인하여 인접동 세대에서 시야가림,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 외벽에 유리마감재(커튼월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튼월룩 설치구간 중 설비배관 및 전기 등 간섭으로 인하여 일부구간 및 부위는 유리마감재가 아닌 금속 등 기타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는 옥상구조물의 기둥 또는 벽체로 인하여 조망,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부 및 지상 저층부 주변으로 LED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벽면 커튼월룩 설치로 인해 907동, 908동, 911동 및 인접동(906동, 909동, 910동 912동, 913동 등)은 빛의 산란 및 반사로 인해 눈부심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클럽자이안,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개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시설(ex :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지자체 무상임차시설로 이용될 수 있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클럽자이안(피트니스, GX룸 등) 및 아너스클럽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운동기구는 준공후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설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LUB CLOUD(스카이라운지) 옥외공간 일부에 하부세대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908동 최상층에는 CLUB CLOUD(스카이라운지)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접한 동 및 세대는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CLUB CLOUD 내부조명 및 외부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클럽자이안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클럽 클라우드, 클럽자이안, 문주 등은 구조 검토 후 최적화 하여 크기, 형태 및 철골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세대당 1개소씩 제공되며, 세대창고의 배분,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설비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차량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1,537대(지하), 근린생활시설 16대(지상), 총 1,553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주차 및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 지하 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77개 (급속 17개, 완속 60개)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주차장 지하 2층은 모든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고, 주차장 사용에 있어 제약 및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901동, 902동)은 지상 1층,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존재하여 인접한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하1층 주차장 사용에 있어 제약 및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903동, 910동)은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존재하여 인접한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지하1층과 연결되지 않아 지하2층의 해당동 인근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 주차장 지하 2층은 모든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차량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901동 912동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단위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500mm)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 및 하향식피난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펜트하우스 및 옥외공간타입 하부 세대의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D, 84T, 99B 옥외공간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해 84D, 84T, 99B의 상부세대는 우천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튐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준공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어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사용 이동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 후 조적 또는 건식으로 마감처리 됩니다. • 옵션 선택 후 변경 및 추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피난구(99㎡A형에서 분리세대는 별도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출입용 분합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하향식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침실 및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실외기실 창호 및 도어, 프레임의 재질, 손잡이, 프레임, 사이즈, 형태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4㎡형의 경우 유리난간이 적용된 부분을 통한 이삿짐 운반 시 유리난간의 파손우려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옥외공간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84D, 84T, 99B, 134A, 134B, 134C)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84D,84T,99B,134A,134B,134C)은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공간에 대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간활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개인물품 훼손, 적치물 낙하 등)에 대해 입주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고,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망권, 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용 수전이 설치 될 134타입의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134타입에는 옥외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옥외공간 상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계획될 수 있으며, 실시설계 시 형태, 크기, 위치, 유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옥외공간에는 추후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34㎡A,B,C타입 최상층 옥외공간 상부에는 옥탑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이로 인하여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발코니	• 오픈형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형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형발코니의 건축 기본마감(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형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오픈형 발코니에는 별도의 바닥 마감이 없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바닥배수는 별도의 선홈통이 없이 난간덕의 관통 슬리브(홈구멍)을 통해 배수됩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빌트인제품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아트월을 포함한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마감재 관련으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산 대형타일은 생산시기에 따라 색상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세대 욕실 세면대 가구장 고정방식 및 하부마감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우물천장, 가구류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비확장발코니에서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옵션 및 마감특화 패키지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관련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기본 냉매매립배관은 천장 속 노출 냉매배관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설치 공사비는 변경공사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외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시에는 추가되는 실외기의 전원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비확장발코니 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알파룸 이 옵션 선택에 따라 대형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욕실의 양변기 지수전이 양변기 뒤벽이 아닌 측벽에 설치되어 양변기 및 청소용 수전 연결호스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세대 내 음성인식 시스템(유상옵션 주방TV폰)은 거리, 음성엔진 인식범위, 주변소음, 전파방해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인식 업체의 정책에 의하여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옵션 선택 시, 주방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상부장에 SMPS함이 설치되어, 해당 수납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Way 전동커튼레일 옵션 선택시, 레일과 모터, 전원과 통신장치가 설치됩니다. (커튼 미포함) • 1Way 전동커튼레일 옵션 미선택 시, 커튼박스에 별도의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Way 전동커튼레일 옵션 선택 시, 커튼 모터의 최대하중은 35kg(직선기준, 원단㎡ 당 1kg 미만기준) 입니다. • 전기쿡탑 옵션선택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 제공되며, 옵션비용은 해당 금액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옵션 선택시 후드 타입에 따라 인근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대형평형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제약과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 됩니다.
	99㎡A	• 분리세대의 가스/수도/급탕/난방 계량기는 분리 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분리세대의 경우 전열교환기가 거실2 천정 노출형으로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분리세대의 주방TV폰, 무선AP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메인세대 및 분리세대는 월패드 및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 분리세대에도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가 설치됩니다. • 분리세대 현관 도어폰을 누르면 메인세대 월패드에서 반응하지 않으며, 메인세대 현관 도어폰을 누를경우 분리세대의 월패드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 일괄소등 스위치가 분리세대에도 설치되며, 분리세대 일괄소등스위치는 분리세대만, 메인세대의 일괄소등스위치는 메인세대만 작동 가능합니다 • 분리세대에는 해당 분리세대용 통신단자함과 세대분전반이 설치되며, 위치는 침실3번 벽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99㎡A형에서 분리형은 901동, 902동, 912동, 913동의 3층~8층에 24세대 계획되어 있으며, 동거형은 901동의 9층~11층, 902동의 9층~13층, 912동의 9층~12층, 913동의 9층~14층에 18세대 계획되어 있고, 청약 시 별도로 구분하여 청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에게 분리형과 동거형의 변경 시공 요청은 불가합니다. • 99㎡A형에서 분리세대의 경우 오픈형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난간에 외부창호 설치가 곤란하여 실외기가 외부에 노출되며, 필요용량보다 큰 실외기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99㎡A형에서 분리세대의 경우 현관 에어 브러쉬,세탁기수전,손빨래수전,발코니수전,욕조,욕조수전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99㎡A형에서 분리세대의 외부공간(오픈형발코니) 바닥은 콘크리트로 마감되며, 청소용 수전 및 해당 배수구와 선홈통은 설치되지 않고 난간턱의 관통슬리브 (홈구멍)를 통해 배수됩니다. • 99㎡A형에서 세대분리형의 경우, 메인 세대와 분리세대간 침실3과 가족욕실 사이의 벽체를 통하여 비상시 대피를 하여야 하며, 해당 벽체에 물건 등을 적치하여 피난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99㎡A형에서 동거형과 분리형의 현관문은 동일하게 2개 설치됩니다. • 분리세대의 오픈형 발코니는 짝수층은 침실3에, 홀수층은 주방겸 거실 쪽에 교차되어 시공됩니다. • 세대창고는 99A타입에 1개소만 제공됩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성능개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동일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자식스위치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전자식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74㎡A/B, 84㎡B/C/D/T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며,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 96㎡A/C, 99㎡A/B, 134㎡A,B,C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96㎡B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되나,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수량 및 디자인은 타입, 옵션,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타입인 84㎡A타입은 스타일옵션 중 미디엄 스타일로, 96㎡B타입은 라이트 스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 위생기구가 설치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시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 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 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IX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방문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월 : 2026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기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지하주차장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이상	2.7m	2.7m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등급
내진중요도 I	Ⅶ - 0.163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파주운정3지구 A-19BL 공동주택
2. 신 청 자 : 지에스건설(주)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26일원 파주운정3지구 A-19BL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자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파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적합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instalments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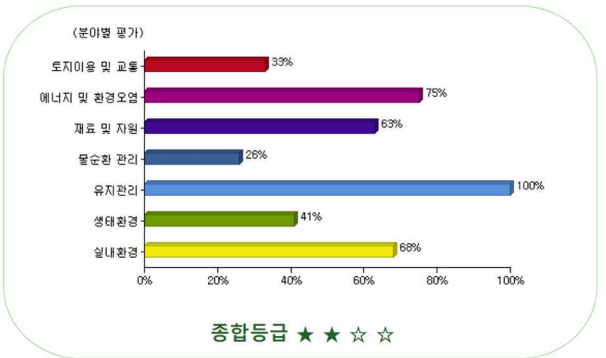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 축 물 명	파주운정3지구 A-19BL 공동주택
건 축 주	지에스건설(주)
준 공 (예 정) 일	2026.01.01.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26일원 파주운정3지구 A-19BL
층 수	지하2층, 지상28층
연 면 적	175,887.8892㎡ (평가 연면적: 174,831.0823㎡)
건 축 물 용 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G-SEED-P-2023-0014-5
인 증 기 관	한 국 부 동 산 원
유 효 기 간	2023.01.0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우량(그린3등급)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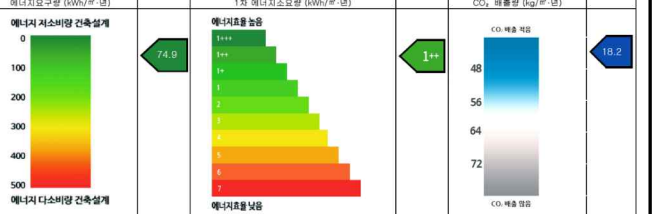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파주운정3지구 A19BL 공동주택	인증번호	22-주-에-1++-0056
준공연도	20260101	평가자	윤지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26 일원 파주운정3지구 A19BL	인증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8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74813.8984(㎡)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8.7	49.8	37.6	8.4
급탕	30.7	36.7	27.6	6.1
조명	5.5	5.0	13.9	2.4
환기		2.8	7.7	1.3
합계	74.9	94.3	86.8	18.2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 년 11 월 15 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장 이선경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47,581,382,368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57,445,631,000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5,735,941,000
		기간이자	5,589,450,209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672,983,000
		필요적 경비	7,695,060,950			조적공사	2,181,480,000			가스설비공사	955,990,000
		그밖의 비용	14,863,805,897			미장공사	6,544,439,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433,985,000
		계	175,729,699,424			단열공사	969,547,000			특수설비공사	2,628,973,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3,609,341,000			방수, 방습공사	2,666,253,000			공조설비공사	924,976,0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3,878,186,000		그밖의공종	전기설비공사	14,245,719,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13,088,878,000			정보통신공사	4,364,396,000
		옹벽공사	328,122,000			금속공사	2,181,480,000			소방설비공사	10,353,054,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홈통공사	484,773,000			승강기공사	3,823,961,000
		우, 오수공사	984,366,000			창호공사	10,907,398,00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2,392,591,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696,706,000			이 윤	13,519,190,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4,605,346,000	계			245,191,893,000
		도로포장공사	984,366,000			돌공사	4,605,346,000	간접비	설계비		4,040,50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4,120,573,000		감리비		5,970,563,763
		정화조시설공사	328,122,000			도배공사	1,696,706,000		일반분양시설경비		3,423,496,514
		조경공사	8,054,686,000			수장공사	4,605,346,000		분담금 및 부담금		9,554,369,000
		부대시설공사	1,148,427,000			주방용구공사	6,786,826,000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7,271,599,000			잡공사	5,332,506,000		기타 사업비성 경비		16,754,632,577
		가시설물공사	2,908,640,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5,735,941,000		계		39,743,561,854
		지정 및 기초공사	5,090,119,000			급탕설비공사	1,433,985,000	그 밖의 비용			69,770,745,722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1,465,000,000	합계			530,435,900,000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비 가산비 계	28,148,317,056	건축비 가산항목	건축비 가산비 계		69,771,173,938
	법정 택지이자	5,589,450,209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		11,342,730,433
	제세공과금	7,695,060,950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3,992,521,098
	말뚝박기 공사비	1,240,288,003		인텔리전트 설비	홈 네트워크	9,116,365,720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3,852,882,070			초고속통신 특등급	2,816,019,360
	방음시설 설치비	8,395,122,613			에어컨 냉매배관	4,177,593,140
	지역난방부담금	1,375,513,211			기계환기 설비	5,546,431,250
				공동주택 성능등급		6,805,638,26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7,851,836,621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996,411,160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74,413,280
				사업승인조건	건강친화형주택 (흡착흡방습 친환경자재)	8,097,834,710
					외관특화 공사비	5,675,277,080
					법정초과조경 설치비	1,450,747,436
				분양보증수수료		1,427,354,390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 '운정자이시그니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3-101-0001800호	삼천구백칠십팔억이천육백구십이만오천원정 (₩ 397,826,925,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계림건축사사무소	㈜아이비엔지니어링	㈜인곡엔지니어링	㈜나라기술단
감리금액	4,413,685,300	670,461,000	729,117,463	157,300,000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하나자산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8조

자금관리사인 ㈜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금관리사인 ㈜하나자산신탁은 매도인 “갑(지에스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우미개발)”을 대리하여 본 공급계약의 공급금액을 수납하며, 수납 공급금액으로 본 사업의 당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업무만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담당할 뿐 자금집행의 타당성, 매도인의 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시공사	지에스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110111-0002694
	코오롱글로벌(주)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코오롱)	110111-0036502
	(주)우미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200111-0042568

▣ 운정자이 시그니처 홈페이지 : https://www.xi.co.kr/PU3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1660-223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